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주요 법적근거

“별지 작성”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 부과하여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엄격히 적용하여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발췌

산업위원회

□ 수도법

- 제53조(원인자 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손괴자 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수도 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②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중위생법

- 제26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①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법 시행령

- 제35조(원인자 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워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참작하여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6조(손괴자 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③ 제35조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